

# 아동학대를 근절하자!



## 그런 비참한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급증중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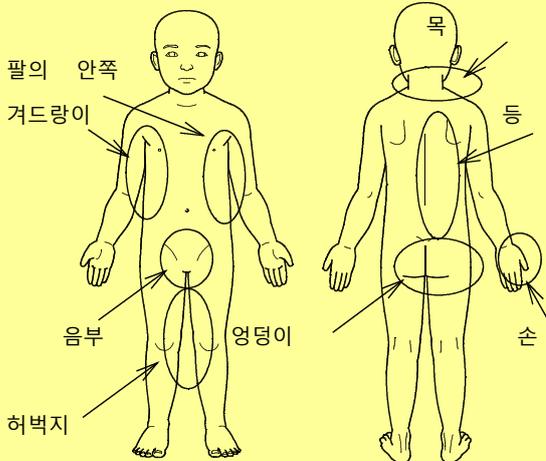
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포인트 세가지

- ① 대부분의 학대살해는 작은 학대가 심해져서 발생!
- ② 누군가가 학대를 막아야 한다. 조기대응이 관건!
- ③ 여러분의 조심과 행동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.

아동학대의 대표적인 특증

### 『폭행등으로 인한 학대』

학대로 다치기 쉬운 부위



◎ 이런 부위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치기 어려운 부위라서 이런 상처는 조심해야 한다.

◎ 특히 다음과 같은 상처는 더욱 조심하자!

- 1 선과 같은 피하출혈 → "방망이에서 얻어맞았어?"
- 2 색조가 다른 멍들 → "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어?"
- 3 둥글고 빨간 얼룩과 수포 → "담배꽂초?"
- 4 잇자국 → "누가 물었어?"
- 5 큰 멍 부기 → "몸이 가볍고 힘도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다치다니 믿을 수가 있어?"

# 『 육아포기 』

육아포기의 포인트

- 【영양실조】
- 【비위생적인 생활】
- 【애정부족】

- 기초질환이 없는데 키가 작고 체중이 적은 등 발육부전
- 옷이 더럽고 계절적에 안 어울리는 옷차림
- 머리카락과 손톱이 길고 더러운 몸
- 많은 충치
- 아이가 울어도 무시하는 등 보호자의 부자연스러운 태도

# 『성적학대 · 심리적학대』

성적학대의 포인트

- 나이에 비해 성에 관한 지식이 많다/ 특이한 자위행위/ 다른 아이의 성기를 만진다/ 자기 성기를 보인다
- 이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접근
- 방뇨를 아파한다/ 성기와 항문의 상처/ 방광염이나 질염

심리적학대의 포인트

- 보호자의 눈치를 본다 또는 무서워한다/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
- 아들 형제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극단적인 차별/ 편애



#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면...

**아동상담소 또는 경찰에  
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!**

1. 안 보는 체하고나 모르는 체하고 하면 안 됩니다. 누구나 다 아동학대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.
2. 심해지는 학대를 통보로 막아야 본래의 가족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아동학대방지법 제6조

아동학대를 당했음에도 모르는 아동을 발견한 사람은 신속히 아동상담소에 통보해야 한다.

실제로 학대를 당한 사람의 말

“그 때 통보되지 않았다면 아이를 죽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말 구조됐습니다.”

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
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동상담소

전화 「189」(상담다이얼)

군마현경찰본부 생활안전부 아동·여성안전대책과

전화 027-243-0110 (대표)

조슈 군



※ 그 이외에 지방 곳곳에 아동학대 상담창구가 있습니다.